

초빙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정 2013. 3. 25.
 개정 2013. 12. 1.
 개정 2014. 5. 1.
 개정 2016.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초빙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적평가의 원칙) 초빙교원의 업적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제3조(평가대상기간 및 시기) ① 본 대학에 재직하는 초빙교원의 평가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시작일이 3월 1일인 교원
 - (1차년도) 당해연도 3월 1일 ~ 12월31일 (10개월)
 - (2차년도 이후) 당해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12개월)
2. 계약기간 시작일이 9월 1일인 교원
 - (1차년도) 당해연도 9월 1일 ~ 차년도 7월 31일 (11개월)
 - (2차년도 이후) 당해연도 8월 1일 ~ 차년도 7월 31일 (12개월)

② 대학에 재직하는 초빙교원 중 계약기간 시작일이 3월1일인 교원은 차년도 1월1일에, 계약기간 시작일이 9월1일인 교원은 차년도 8월1일에 평가한다.

제4조(교원업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본 대학에 재직하는 초빙교원 중 계약기간 시작일이 3월1일인 교원은 매 학년도 3월 30일까지, 계약기간 시작일이 9월1일인 교원은 매 학년도 9월 30일까지 자기 발전계획서를 해당 스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에 재직하는 초빙교원 중 계약기간 시작일이 3월1일인 교원은 매 학년도 12월 30일까지, 계약기간 시작일이 9월1일인 교원은 매 학년도 7월 30일까지 평가 대상기간의 업적을 해당 스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절차) ① 해당 스쿨은 각 초빙교원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교원인사 담당부서에 통보하며, 담당부서는 개별 초빙교원의 업적심사결과를 수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총장은 평가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는 업적평가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심사결과를 해당 초빙교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6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교원은 개인수업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와 재심청구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결과를 초빙 교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

제7조(평가영역 및 비율) 평가영역은 총 100점으로 구성되며, 개인수업평가 50점, 원장평가 25점, 다면평가 25점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제8조(개인수업평가) ① 개인 수업평가는 평가기간 중 2개 학기의 개인수업 평가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② 개인별 수업 중 15인 이하 강의 및 공동체 과목은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평가 담당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 또는 전체 초빙교원에게 공지 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대학 발전을 위한 대학 프로젝트 및 업무수행을 위해서 부득이 기준시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내부결재를 득한 것에 한해 기준시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주당 수업시수가 기준시수 대비 부족할 경우 : 부족시수*4점(최대 20점까지 감점)

제9조(원장평가) 원장은 개인별실적표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원장평가표를 작성한다.

제10조(다면평가) ① 원장은 해당 초빙교원의 다면평가를 위해 평가자를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자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② 원장에 의해 구성된 평가자는 초빙교원의 개인별실적표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다면평가표를 작성한다.

제11조(비밀유지) 본 평가에 참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을 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2조(보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초빙교원의 업적평가 결과는 초빙교원의 재계약 및 전임교원으로서의 전환 시 정성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자기발전 계획서

Blank area for the self-development plan.

제출자 :

부서장 :

3. 다면 평가표

분야	내용	점수
교육적 효과	○ 업적의 추진에 따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는가?	
산업적 효과	○ 업적의 추진에 따라 관련 산업에서의 위상이 증가 되었는가?	
학문적 효과	○ 업적의 추진에 따라 관련 학계에서의 위상이 증가 되었는가?	
홍보적 효과	○ 업적의 추진에 따라 스쿨 혹은 학교의 이미지가 개선 되었는가?	
홍보적 효과	○ 업적의 추진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입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는가?	
계 (100점 만점)		

4. 원장 평가표

분야	내용	점수
온리원시스템	○ 업적의 추진에 따라 스쿨의 온리원시스템 달성이 이루어졌는가?	
커리큘럼 개선도	○ 업적의 추진에 따라 스쿨 전공의 커리큘럼이 개선되었는가?	
취업률 기여도	○ 업적의 추진에 따라 스쿨 취업에 기여하였는가?	
학교행정 기여도	○ 업적의 추진에 따라 학교 행정에 기여하였는가?	
산학협력 기여도	○ 업적의 추진에 따라 산학협력에 기여하였는가?	
입시기여도	○ 업적의 추진에 따라 스쿨 전공의 입시에 기여하였는가?	
학교몰입 및 기타 기여	○ 학생면담, 부서조직문화기여도, 출퇴근, 학교이미지제고, 창의제안 등 학교 몰입이 충분하였는가?	
계 (100점 만점)		